

**「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」  
2026년 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**

산업통상자원부 「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」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**2026년 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**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7월

(재)창원산업진흥원 원장

**필독 사항**

-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창원시 지방자치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**창원시의 방침을 우선**하며 ‘창원시 의료바이오 혁신기업 육성계획’, 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’, ‘지방보조금 관리기준’, ‘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’, ‘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’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함

-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%(현금 100%) 이상 필수
- 사업비는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, 시험인증비 등 직접 수행비를 중점적으로 편성
- 자산확보성 구매(기계장비, 단순 제조·시험·측정 장비, 컴퓨터, 3D 프린터, 차량, 범용 소프트웨어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유형자산으로 사용가능하며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장비) 불가
-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출장(박람회 참가 등) 지양
- 인건비성 비용(개발비, 제작비, 노무비 등)은 불인정

-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 「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」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**한국전기연구원,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**는 참여기관으로 **참여 및 사업비 지급 불가**
- ‘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제 1장 제 3조(적용범위) 2항’에 의거하여 동 지침 적용 예외 사업
- 의료·바이오 기술개발을 통한 “사업화”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
- **사업비**는 기업에서 선집행을 통한 사업추진 후 결과평가 및 정산에 따른 **후지급**
-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가능
-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**사업비 유용**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**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**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- [붙임] 지원제외 대상 목록 확인 필수

## 1.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:** 창원시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기기 부품 제조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함
- **사업명:** 2026년 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(1차)
- **모집기간:** 2026. 7. 22.(수) ~ 8. 21.(금)
- **지원내용:** 의료기기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관련 시제품 & 고도화 개발 지원
- **지원대상:** 관내 의료·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·후방 기업

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(연구소) 보유기업

### 〈지원 제외대상〉

- 서류 미비, 허위사실 제출 등이 발견되는 경우
- 과제 중복성에 해당하는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
- 기타 창원산업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## 2. 지원내용

- **지원규모:** 총 10개사 내외
- **지원범위 및 내용**

| 구분 | 세부실행과제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요건    | 지원내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수<br>(건) | 지원금<br>(백만원)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의료기기 부품모듈<br>시제품 연구개발<br>지원 | TRL 4~5 | 필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시제품 연구개발 지원</b></li> <li>- 국산화 및 기술개발 개념정립 및 검증이 끝난 품목의 시제품 설계 및 연구개발 지원</li> </ul> | 5         | 250<br>기업당<br>최대<br>5천만원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보조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험성능 평가분석비 지원</li> <li>- 시제품 성능평가(비임상포함) 분석비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의료기기 부품모듈<br>고도화 연구개발<br>지원 | TRL 6~8 | 필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제품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</b></li> <li>- 개발이 완료된 유망 품목에 대한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</li> </ul>           | 5         | 500<br>기업당<br>최대<br>1억원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보조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험성능 평가분석비 지원</li> <li>- 시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 분석비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컨설팅 지원</li> <li>- 개발 제품 품질기준,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등 개발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시제품 혹은 고도화 지원에 관련 추가 보조지원 가능(예: 시제품제작+시험인증지원)

※ 신청단계 기술성숙도(Technology Readiness Level)

| 단계 | TRL1    | TRL2    | TRL3         | TRL4  | TRL5          | TRL6      | TRL7       | TRL8 |
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내용 | 기본원리    | 개념정립    | 개념검증         | 시작품   |               | 시제품       | 비임상        | 임상   |
|    | 기초이론 정립 | 기술개념 정립 | 특허출원/기본성능 검증 | 설계 제작 | 성능평가 (비임상 포함) | 설계제작 성능평가 | 안전성 유효성 평가 | 인·허가 |

**의료기기 부품·모듈 시작품 &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**

○ 지원내용: TRL 4~5단계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부품·모듈 시작품 연구개발 및 시험 지원 &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제품 고도화 연구개발 및 시험 지원

○ 지원규모: 시작품 5개사(기업당 최대 5천만원)  
제품 고도화 5개사(기업당 최대 1억원)

- 지원금은 최종 결과평가 이후 **결과 및 증빙에 따른 후정산**
- 기업부담금: 지원금의 25%이상 부담 \* 부담금 현금 100% (현물 불인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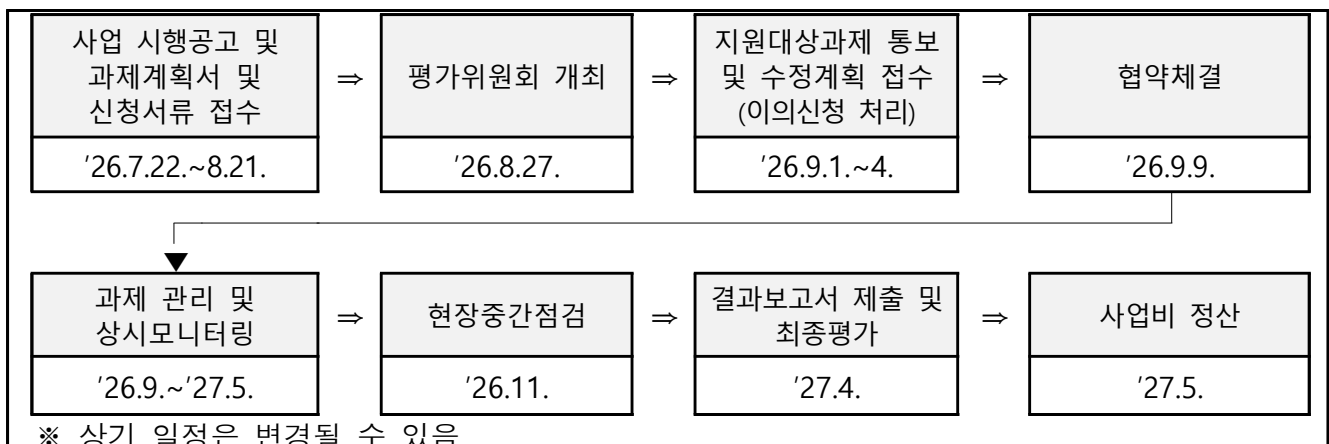
| 구분    | 총사업비(가)    | 시지원금(나)    | 민간부담금(다)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구성 기준 | (나)+(다)    | 선정금액       | (나)의 25% 이상 |
| (예시)  | 62,500,000 | 50,000,000 | 12,500,000  |

○ 지원기간: 2026. 9. ~ 2027. 5. (10개월)

○ 지원요건

-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법인기업
-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
-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·후방(예비) 기업
- 지원제외대상\*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\*세부사항 불임3 참조)

○ 지원절차 및 일정



### 3. 선정평가

○ **평가일자:** 예정 2026. 8. 27.(목) (세부 일시 및 장소는 접수자 대상 별도 안내)

○ **평가방법:**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(PPT발표)를 통해 선정

○ **선정평가위원회 구성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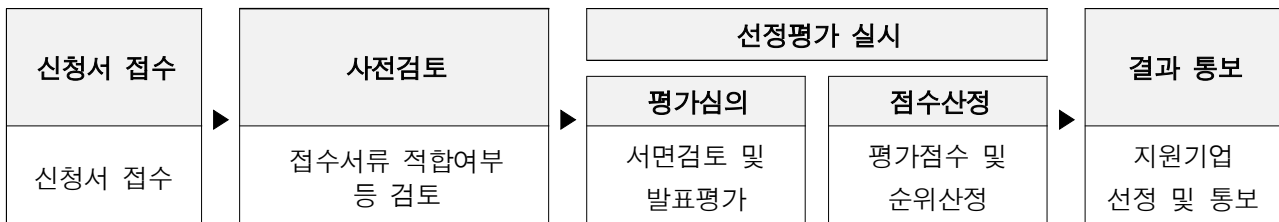
- 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은 **비공개**를 원칙으로 함
- 선정위원회는 산업·연구계·관련학과 전문가 등 **관련 분야 대표성**을 갖춘 자로 구성

#### 〈평가위원 선정〉

- 고유번호(1~43)를 부여한 예비위원명부 작성 후 봉인 및 보안유지
- 감독관 입회하에 43명 중 추첨을 통한 21명 예비명부 작성
-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21명 중 고유번호 추첨 및 확인
- 추첨은 제출 접수 순으로하며 추첨된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에 대하여 개별연락을 통해 평가위원회 개최 통지
- 평가위원 사정에 의해 참여불가 시 차순위 평가위원 연락 후 평가위원회 최종 구성

| 구 분       | 예비위원 고유번호 작성    | 고유번호 추첨 및 확인    | 개 봉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평가위원 구성일정 | 2026. 8. 10.(화) | 2026. 8. 26.(수) | 2026. 8. 26.(수) |
| 책임자       | 이항우             | 홍상연             | 이항우             |

○ **선정절차**



- (1단계)서류심사: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

- 서류심사는 기업의 지원조건 충족 여부, 필수제출서류 누락여부, 재무 건전성 등의 지표로 **합격, 불합격**으로만 판단

1.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
2. 신청자격 검토
  - 1)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
  - 2)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활용)
  - 3)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 - 4) 참여 제한 여부
  - 5)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  - 6)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

- (2단계)선정평가: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PPT 발표평가 심사
  -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, 7인의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운용
  -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(PM) 포함 3인 이내로 하며, 업체당 30분(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) 이내로 진행
  -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발표내용을 평가표에 따라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·평가하며,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의 기업을 고득점순으로 선정
  - 평가점수는 최고점 1개,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점수 산출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- 평가평균 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 확정
- 동점자 처리기준
  -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①정량평가점수 ②기업역량 ③사업추진계획 ④기대효과 ⑤가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
  - 위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재개최하여 따로 선정함
- 선정평가 행정상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, 선정 대상자의 모든 평가요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재평가가 검토됨
- 평가결과심의: 평가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내부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 과제 확정
- 최종선정공고: 평가위원 지적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진행 후 사업추진
-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

## ○ 평가지표: 붙임서류 참조

## 4.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: 2026. 7. 22.(수) ~ 8. 21.(금)까지

○ 신청방법: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

### < 접속경로 >

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cwip.or.kr>) → 사업신청 → 지원사업 신청 → 의료바이오팀  
→ 2026년 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

※ 직접방문(오프라인 접수) 및 e-mail 접수 불가

## ○ 제출서류

| 구분                   | 서 식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<br>형태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획서                  | 과제계획서 (시작품: 계획서 40쪽 이내, 요약본 2쪽 이내, 제출서식 참조)<br>※ 반드시 <b>직인 날인</b> 하여 제출 | 한글(HWP)/<br>스캔(PDF)<br>온라인 업로드 |
|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개발전략 로드맵 [사업계획서 붙임4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시장진출전략 로드맵 [사업계획서 붙임5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제품생산계획서 [사업계획서 붙임6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개발 제품 요약서 [사업계획서 붙임8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적격여부<br>확인서류<br>[필수] |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[사업계획서 붙임1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 [사업계획서 붙임2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과제(부문)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 현황 [사업계획서 붙임3]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(명), 중소기업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유사과제 검색결과 확인서(NTIS), 중복과제 확인서약서[사업계획서 붙임9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(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)<br>※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, 재무건전성, R&D 투자실적 등 확인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추가서류<br>[해당시]        |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기술·품질 인증 및 인정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·외 관련 특허 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국내·외 관련 논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R&D 전담 증빙(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, 전담부서(인력) 비중 증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(기관, 연구소, 병원 등) 연계 방안 [사업계획서 붙임7]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체결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증빙 제출서류만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

## 5. 유의사항

### ○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
- 신청서, 첨부서류를 모두 **온라인**으로 접수
-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비롯한 첨부서류 전체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, **마감시간 이후 접수문서는 불인정**
- 회원가입,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~3일전 과제가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
-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보유기간(선정 후 5년간) 이후 파기 예정
- 지원제외 대상 목록 확인 필수
-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취소가 될 수 있음
- 선정평가에 의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사업비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,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, 「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」에 맞도록 사용 관리되어야 함
- 사업비는 다른 자금과는 **별도 통장**으로 관리하여야 함
- 사업 수행도중 사업비목의 임의 변경 및 사용, 창원시 및 전담기관의 지적 및 주의 사항 미반영 등에 대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행기업에서 부담하며, 사업정지, 사업비 불인정·환수 및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선정기업 정산 전 외부 회계사무소의 **회계감사보고서** 제출 \*요율 붙임 참조
- 사업비는 결과평가 이후 정산에 따른 후지급

## ○ 후속관리

- 사업계획서와 사업 결과평가 및 성과에 따라 **후속사업(의료·바이오 첨단기기 시제품 연구개발·고도화 지원사업 등) 신청시 우대** \*결과평가 우수(80점) 이상 시 가점 부여
  -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에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 ‘**성과활용보고서**’를 제출하여야 함(\*연구개발 후속 실적, 매출 증가 실적, 지식재산권, 고용실적 등)
  - 연구성과를 발표할 때(논문, 특허 등)는 ‘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첨단의료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’ 및 ‘창원시, 창원산업진흥원’에서 지원하는 **사업의 성과임을 표시**하여야 함
  -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(출원·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업이 소유하여야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 - 본 사업인 **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**으로 개발된 기술이 포함된 제품(연관제품 포함)은 **창원시에서 생산*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   - 상품 최초 출시 후 5년간 창원시 관내에서만 제조하여야 함
    - 상품 최초 출시 후 10년간 핵심제품은 창원시 관내에서 제조하여야 함
    -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3배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
- \* 세부기준은 [붙임 9] 기술개발 제품 협약서에 명기

## 6. 문의처

### ○ 문의처

| 구분  | 담당자1              | 담당자2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이름  | 이항우 사원            | 박진우 대리          |
| 이메일 | hw3473@cwip.or.kr | jinu@cwip.or.kr |

\* 문의사항은 e-mail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## [붙임1] 선정평가표

### ○ 선정평가표(안)

| 영역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 주안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기술성<br>(70) | 혁신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한 의료·바이오첨단기기가 기존 기기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?</li> <li>해당 기술 및 제품이 창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,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?</li> <li>※ 사업계획서에 혁신성에 대한 내용 반영</li> <li>과제계획서의 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인가?</li> <li>AI·빅데이터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?</li> <li>※ 필수서류: 과제계획서, 과제계획서 요약본</li> </ul> | 25 |
|             | 원천성<br>및<br>관리성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품의 원천성이 강하고 권리성의 확보가 잘되어 있는가?</li> <li>※ 사업계획서에 원천성과 관리성에 대한 내용 반영</li> <li>※ 필수서류: 국제특허(등록 및 출원, PCT 포함), 국내특허(등록 및 출원), 제공 기술 관련 최근 5년간 국제논문(참여 인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) 등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|
|             | 기술<br>개발<br>전략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개발 계획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는가?</li> <li>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조정 방안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?</li> <li>제품의 시작품, 시제품의 생산 등 연구비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?</li> <li>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걸림돌(저해요소)을 분석하고,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는가?</li> <li>※ 필수서류: 기술개발전략 로드맵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사업성<br>(30) | 사업화<br>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시된 기술의 기술성숙도가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인가?</li> <li>사업화에 대한 준비(기술개발정도, 제품제작능력 등)가 잘되어 있는가?</li> <li>※ 필수서류: 기술성숙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            | 시장<br>진출<br>전략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품에 대한 시장분석이 면밀하게 되어 있는가?</li> <li>제품의 효율적인 유통 방법과 판매처 확보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?</li> <li>※ 필수서류: 시장진출전략 로드맵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            | 의료·<br>바이오<br>제조<br>산업의<br>창원<br>집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원시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안과 투자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?</li> <li>AI 빅데이터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는가?</li> <li>창원 관내 기업(기관, 병원 등)과의 연계방안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?</li> <li>사업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?</li> <li>※ 필수서류: 제품생산계획서</li> <li>※ 추가서류: 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(기관, 연구소, 병원 등) 연계방안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 10 |

### ○ 우대가점 및 감점

| 구분 | 우대 및 감점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가점 | ① 참여기업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점  |
|    | ② 진해 지식산업센터 기 입주기업<br>· 사업지원서 신청 전까지 입주계약 체결 및 관련비용 납부 완료 기업 포함<br>* 평가 후 현장점검에서 미흡 혹은 부적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| 2점  |
| 감점 | ① 평가결과가 “중단(불성실)” 또는 “불성실수행”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(단,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)                 | -2점 |
|    | ②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(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)으로 신청하는 경우 | -1점 |

※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, 가점 인정 불가

## [붙임2] 지원제외 대상

### ① 접수서류

- 과제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 -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☞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

### ② 중복성 검토

-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확인하며, 주관 연구책임자에게 중복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  - 연구자는 NTIS(www.ntis.go.kr)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- 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 검토
- 창원산업진흥원, 경남테크노파크 등 기관 지원사업 중복 자체 검토(중복과제 확인 서약서 제출)
  - 신청한 연구개발과제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관 지원과제(창진원 포함)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# ③ 신용 및 기업상태

- 기업이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  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는 경우 예외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※ 채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

#### <관련 문의처>

- 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→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※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 
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  - \*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3년치를 제출
-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(과제책임자 및 기업체)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 및 협약 해지 조치

#### **④ 기타 사업목적 등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**

-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  - ※ 접수 마감일 이전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
-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기업의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  - 기업이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경우
  -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  - 민사집행법에 따라 '채무 불이행자 명부'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'채무 불이행자'로 등록된 경우
  - 파산, 회생,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  -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의견'인 경우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  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.

### [붙임3] 기술성숙도(Technology Readiness Level) 예시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RL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RL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RL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RL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RL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RL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RL 7                         | TRL 8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료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기본원리)<br>· 기초이론 정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기술개념/적용분야)<br>· 개념 및 응용 분야 정립                         | (개념검증)<br>· 특허출원<br>· 기본성능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작품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임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임상)<br>· 허가용 임상시험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설계/제작)<br>· 시작품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신뢰성)<br>· 시작품 성능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실험실)<br>· 초기 안전성<br>· 유효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GLP)<br>· GLP안정성<br>· 유효성 평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의료기술 개발<br>(진단법, 치료법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의료기술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의료기술 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임상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약품<br>(신약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과학적발견)<br>· 기술개발 초기단계<br>· 과학적 발견을 통해<br>신기술 가능성 탐색 | (개념설정/정립)<br>· 가설 설정<br>· 연구계획 · 방법<br>수립<br>· 동료전문가검토 | (개념검증; POC)<br>· 기초연구, 정보수집<br>및 분석<br>· 신약개발 기술성 평가<br>· 초기후보물질 도출<br>및 작용기전 파악 | (in vivo 검증)<br>· Non-GLP 생체내<br>(in vivo) 안전성<br>· 유효성 확보 | (GLP 검증)<br>· GLP 비임상연구<br>· 임상용 GMP<br>공정 확립      | (임상1상)<br>· 임상1상<br>진행·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임상2상)<br>· 임상2상<br>진행·완료     | (임상3상)<br>· 임상3상<br>진행·완료   |
| 생물학적<br>제제/백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과학적 문헌 리뷰<br>· 초기 시장조사 결과<br>평가                    | · 연구계획 개발<br>· (동료)평가 ·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후보 제제/백신에 대한<br>in-vitro / in-vivo PO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지정된<br>실험실/<br>동물모델로<br>후보<br>제제/백신의<br>POC·안전성<br>입증    | · IND 신청을<br>위한 후보<br>제제/백신의<br>충분한 기술적<br>data 확보 | · 임상적 안전성<br>확보를 위한<br>임상1상 data<br>확보<br>· 임상 2상으로의<br>진입 지원 | · 임상3상 계획 혹은<br>대용시험계획 승인     | · CBER에 의한<br>BLA 승인        |
| 바이오마커<br>(Biomarker<br>Readiness<br>Levels) | BRL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RL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RL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RL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RL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RL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BRL 7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기초개념 관찰 및<br>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바이오마커<br>평가기술 입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분석적/실험적 개념<br>검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실험실 환경에서의<br>요소/시스템 입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관련 환경<br>(예: 코호트)에서의<br>시스템 효능 입증                | · 모집단에 대한<br>실질적인 효능<br>테스트 및 입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일반인에 대한<br>스크리닝/진단<br>테스트 |

## [붙임4] 회계정산 수수료율(예시)

### □ 위탁정산수수료규정

#### ○ 기본보수료

| 개발 사업비 규모*         | 정산수수료* (천원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억원 미만             | 987         |
| 1억원 이상<br>3억원 미만   | 1,185       |
| 3억원 이상<br>5억원 미만   | 1,515       |
| 5억원 이상<br>10억원 미만  | 1,647       |
| 10억원 이상<br>30억원 미만 | 1,845       |
| 30억원 이상            | 2,043       |

\* 사업비 규모 : 정부출연금+민간현금의 합 (현물은 포함되지 않음)

\* 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금액임

#### ○ 공동참여기관 갯수에 따른 가산금

| 공동참여기관 수 | 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0개       | 가산금 없음                  |
| 1개       | 수수료의 10%                |
| 2개 이상    |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%씩 가산 |

※ 위탁정산기관 및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변동 가능